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23・ 8・14 조례 제196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공직자”란 이천시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
   나. 투자・출자・출연기관 등의 임직원
   다. 「이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」에 따른 공무직
2. “투자・출자・출연기관 등”이라 함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이천시가 설치한 공사・공단 및 「이천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이천시에서 출자・출연한 단체・기관을 말한다.
3. “부패행위”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직자의 청렴 의무)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・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종합대책의 수립・시행 등)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(이하 “종합대책”이라 한다)을 수립・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
2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
3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
4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·추진과제
5.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
6.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·시행과 관련하여 이천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시행 등)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교육 및 홍보 사업
2.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
3.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·설문조사
4. 부패방지시스템 구축·운영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) 시장은 청렴업무 담당 부서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청렴문화향상 회의)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향상 회의를 실시하는 등 이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청렴문화향상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,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이천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청렴도 조사) 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

있다.

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
2.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
3. 민원업무 분야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

제11조(청렴교육 및 홍보 등)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서포터즈 활동,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이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협력체계)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3조(포상) 시장은 이천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